

『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관련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체납된 사용료 가산금 “ 100분의 3”를 “ 100분의 5”으로 조정
- 원인자부담금 증가산금 대상금액 “ 300천원”을 “ 100천원”으로 조정

4. 참고사항

- 하수도법 제3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침해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적용코자 함이며,
- 주요내용으로는
 - 체납된 사용료의 가산금 “ 100분의 3”을 “ 100분의 5”로 조정
 - 원인자부담금 증가산금 대상금액 “ 300천원”을 “ 100천원”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,
당초의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일부내용이 상위법을 침해함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